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권리 고지 의무 신설 등〉
■ 황정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468호)

2025.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혜 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출자 : 황정아의원 등 19인
2. 발의일 : 2025. 1. 13.
3. 회부일 : 2025. 1.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복범죄가 큰 폭으로 늘어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언론에 따르면 보복범죄의 70%는 수사 초기에 발생하는데, 경찰에 체포된 가해자가 석방되거나 불구속 상태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찾아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가 검거되지 않아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가해자 검거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혀 제공 받지 못했이라며 관련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음.

이외에도 최근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보복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범죄 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수사 및 형사사법 절차 관련 정보의 범죄피해자 제공과 해당 권리에 대한 고지 등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국가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권리 고지 의무를 신설하고 범죄피해자가 원할 시 수사 및 재판관련 정보와 가해자의 신병에

대한 변동사항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가해자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변보호를 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범죄피해자를 더 촘촘히 보호하고자 함(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3).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형사 절차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정보를 고지하여야 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가 있을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권 또는 범죄피해자의 신청으로 재판 및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병(身柄)에 관련된 변동 상황을 범죄피해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3).

현행	개정안
제8조의2(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① 국가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2. (생략) <u><신설></u>	제8조의2(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① ----- ----- ----- -----.
3. (생략) ② (생략) <u><신설></u>	1. 2. (현행과 같음) 3. <u>가해자에 대한 수사 관련 사항, 공판진행 사항, 형 집행 상황 및 보호관찰·감정조치 집행 상황 등 형사 절차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정보</u>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u>제8조의3(피고인 등과 관련된 주</u>

현행	개정안
	<u>요 변동 상황 통지) ① 범죄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또는 범죄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체포·구속 및 석방과 관련된 사법경찰관·검사·법원의 처분 내용, 재판선고기일이나 선고 내용 및 가석방·형집행정지·형기만료나 보안처분종료 등으로 인한 교정시설 등에서의 출소사실이나 도주사실 등 재판 및 신병(身柄)에 관련된 변동 상황을 범죄피해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재판 및 신병에 관련된 변동 상황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현행법 제8조의2¹⁾는 국가가 범죄피해자에게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국가가 범죄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정보에 ‘가해자에 대한 수사 관련 사항, 공판진행 사항, 형 집행 상황 및 보호관찰·잠정조치 집행 상황 등 형사 절차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범죄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현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대검찰청예규 제1476호) 제15조²⁾에서는 검사 또는 수사관으로 하여금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 등의 정보가 기재된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1부를 범죄피해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

1) 제8조의2(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① 국가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범죄피해자의 해당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2.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5조(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① 검사 또는 수사관은 범죄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가 기재된 별지 제4호의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1부를 범죄피해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1부는 서식 하단의 확인자란에 범죄피해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 한다.

1.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

2.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정보

3. 기타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원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1125호) 제15조 및 제16조³⁾에서는 경찰관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권, 신뢰관계자 동석권 등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 등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는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사건진행상황, 가해자의 구속·형집행상황 등 형사절차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안내’에서는 경찰 수사 결과를 사건 담당수사관으로부터 통지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⁵⁾

□ 다음으로, 현행법 제8조제2항⁶⁾은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결과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⁷⁾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3) 제15조(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81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정보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늦어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제1항에 따른 결정(이송 결정은 제외한다)을 하기 전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1.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권, 신뢰관계자 동석권 등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
2. 범죄피해자구조금, 심리상담·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제도 및 지원단체에 관한 정보
3. 배상명령제도, 긴급복지지원 등 그 밖에 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16조(정보제공절차) ① 제15조의 정보제공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안내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경찰관은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인신매매, 성매매 피해자에게 제1항의 방법으로 정보제공 시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의 서식 중 각 유형에 해당하는 안내서를 추가로 교부한다.

③ 경찰관은 피해자가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서면을 교부하는 것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전화, 모사전송, 우편,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별지 4]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5)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별지 1]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6) 제8조(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 공판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에 따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형사소송법」 제259조의 28)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검사가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가 있을 경우 범죄피해자의 신청만이 아니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권으로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재판 및 신병(身柄)에 관련된 변동 상황을 범죄피해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가해자의 보복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7)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① 법 제8조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이하 “형사절차 관련 정보”라 한다)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사 관련 사항: 수사기관의 공소 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불송치, 수사중지, 이송 등 결과
 2. 공판진행 사항: 공판기일, 공소 제기된 법원, 판결 주문(主文), 선고일, 재판의 확정 및 상소 여부 등
 3. 형 집행 상황: 가석방·석방·이송·사망 및 도주 등
 4. 보호관찰 집행 상황: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의 개시일 및 종료일, 보호관찰의 정지일 및 정지 해제일 등
- ② 형사절차 관련 정보는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죄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도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③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요청한 경우 해당 국가기관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으로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형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서면, 구두, 팩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 8)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4조⁹⁾에서는 검사 또는 수사관이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에게 제공하도록 하되, 가해자의 구속·석방 등 신병에 관한 상황, 출소 등 형집행상황에 관한 정보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하도록 함.

□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 등의 의사와 관계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피고인 등에 재판·신병 관련 사항을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등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범죄피해자’¹⁰⁾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 등 각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될 우려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함.

○ 참고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4조제2항¹¹⁾

9) 제24조(형사절차 정보제공) ① 검사 또는 수사관은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에게 가해자(피해를 가한 피의자·피고인에 한한다)에 대한 사건접수배당, 사건결정결과,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구속·석방 등 구속에 관한 사실, 출소 등 형집행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가해자의 구속·석방 등 신병에 관한 상황, 출소 등 형집행상황에 관한 정보는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제공한다.

②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가 제1항의 정보제공을 원하지 않거나 정보제공으로 인해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의 신청 또는 제2항의 정보제공 불원 의사표시는 언제든지 별지 제15호 ‘형사절차 정보제공 신청(불원)서’를 작성하여 민원실 또는 피해자지원실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다만, 구두·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범죄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제공에 대한 신청(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11) 제24조(형사절차 정보제공) ②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가 제1항의 정보제공을 원하지 않거나 정보제공으로 인해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은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가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을 원하지 않거나, 정보제공으로 인해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 관련 정보 요청권이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고지하고 보복 우려가 있으면 가해자의 출소·석방 등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면서, 개정안 제8조의2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 요청권 의무적 고지에 대한 내용은 법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이므로, 법 제8조 제2항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¹²⁾ 또한, 개정안 제8조의3에서 규정하는 피고인 등과 관련된 주요 변동 상황 통지의 경우, 이미 현행법 제8조제2항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8조의3 신설보다 제8조 제2항을 개정하여 ‘구금 상황’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가해자의 구금에 관한 정보는 수사의 밀행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그 통지 범위를 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바, 개정안과 같이 법률에 명시하기 보다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¹³⁾

12)

개 정 안	법무부 수정안
제8조의2(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① 3. 가해자에 대한 수사 관련 사항, 공판진행 사항, 형 집행 상황 및 보호관찰·잠정조치 집행 상황 등 형사 절차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정보	제8조의2(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① 3. 제8조제2항에 따른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정보

문 의 처
02)6788-5073

13)

개 정 안	법무부 수정안
제8조(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 공판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요청하거나 범죄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 공판기일, 재판 결과, 구급 상황,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의3(피고인 등과 관련된 주요 변동 상황 통지) ① 범죄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또는 범죄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체포·구속 및 석방과 관련된 사법경찰관·검사·법원의 처분 내용, 재판 선고기일이나 선고 내용 및 가석방·형집행정지·형기만료나 보안처분종료 등으로 인한 교정시설 등에서의 출소사실이나 도주사실 등 재판 및 신병(身柄)에 관련된 변동 상황을 범죄피해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판 및 신병에 관련된 변동 상황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